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890호
2. 발 의 자 : 김용연 의원 외 11명
3. 발의일자 : 2019. 8. 7.
4. 회부일자 : 2019. 8. 13.

II. 제안이유

-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밀집 지역 변화 등으로 폐교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폐교 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이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또는 시정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 및 사회·문화·복지의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교육용시설, 사회·문화·복지시설 등으로의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 및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폐교 활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록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2.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3.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9조)
4. 폐교재산 관리의 위탁운영 및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5.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및 영구시설물의 축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문 및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5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도서관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8월 7일 김용연 의원 외 11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890호로 공동 발의되어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공립학교 중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폐교의 시설과 재산에 대하여 활용계획의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원 및 대부·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저출산 노령화 사회로 인해 학생수가 감소하고, 택지개발 등에 따른 기존 학교의 이전 및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각급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이 어려워져 폐교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폐교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해당되어 처분이나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바, 현재 교육부 통계¹⁾에 따르면 전국 3,784교의 폐교 중 매각을 제외한 1,409교의 폐교 가운데 28%인 395교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폐교정보(<http://www.eduinfo.go.kr/portal/theme/abolSchStatusPage.do#none>), 2019.3.1.기준.

- 정부는 이처럼 증가하는 폐교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2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을 제정하였고,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예술 등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재개교의 가능성이 없는 폐교재산의 경우에는 민간경제활동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서울시의 경우 학교부지 매각에 따른 실질적인 폐교는 지난 1999년에 발생한 오곡국민학교 1교2)에 불과하고, 최근 10년간 폐교 처분이 내려진 5개교(사립학교 포함)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나 학교급의 변경 또는 이전 개교의 형태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폐교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표-1] 최근 10년간 폐교 학교 현황

연번	학교급	교명	위치	설립별	폐교일자	폐교사유
1	중	해성여자 중학교	동대문구 전농동 (해성여고 내)	사립	2010.2.28.	해성여중을 해성여고로 개편 신설
2	고등기술 (고)	정화미용 예술학교	중구 남산동 (정화예술대 내)	사립	2012.6.29.	전공과 과정이 정화예술대학으로 전환되어 폐지
3	초	서울흥일 초등학교	금천구 시흥동 (현 한울중)	공립	2015.2.28.	신흥초와 통합,(구)흥일초에는 한울중 이전 개교
4	초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은평구 응암동 (현 꿈나무마을)	사립	2015.2.28.	부모 이탈 보호대상아동수 급감, 시설보호대상 학교 운영 불필요
5	특수	서울명수 학교	성북구 성북동 (현 서울다원학교)	사립	2015.8.31.	중증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긴급 보호를 위하여 사립 폐교 및 공립학교 신설

2) 서울시교육청 매각 폐교 : 1건

소관	폐교명	폐교년도	주소	매각일자	매각금액(원)	매수자	매수사유
강서 양천	오곡국민학교	1999	강서구 오곡동 1555	2003.8.12	2,728,284,800	영구아트 심형래	문화시설 활용

- 다만 현재 가칭)마곡2중 신설을 위한 열강초³⁾, 공진중⁴⁾의 경우에는 학생배치계획상 폐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활용 등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검토하고 있지 않는바, 폐교재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구체적 활용계획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에 있어 교육감에게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활용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및 위탁·운영 등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⁵⁾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3) 2019~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서울시교육청, 2018.12.)

4) 2019~2023학년도 중학교 학생배치계획(서울시교육청, 2018.12.)

구성 측면에 있어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조례 제명과 목적에 관한 의견(안 제1조)

- 동 「서울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 따르면 폐교재산에 대한 건전한 활용 촉진으로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의 확충과 소득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안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체계상 조례의 제명은 조례가 규율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띠어야 하며⁶⁾, 조례의 목적규정은 일반 주민으로 하여금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조문의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⁷⁾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의 제명은 폐교재산의 관리·운영 주체인 교육감에게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관리·운영 방안 마련이 아닌 별도의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안은 폐교재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아닌 폐교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의 목적도 폐교재산의 관리를 위한 활용 촉진에 관한 것인바,

동 조례의 제명은 안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정 취지 및 조례안 내용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되는 조례 제명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18.6.

6) 법제처 의견 13-0291 참조

7)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76~p.77 참고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폐교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조례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

2)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안 제4조)

○ 안 제4조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안 제1항)과 매년 시행계획(안 제3항)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의 수립시에는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안 제4항)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 제4조제4항의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가 「지방자치법」 제2조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이므로 ‘관계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안 제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와 교육청이 제시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자치단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4조제4항의 수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의견(안 제5조~안 제7조)

○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폐교재산의 활용과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자문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등 폐교재산 관리·처분 전반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8)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 그러나 공유재산⁹⁾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¹⁰⁾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¹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처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¹²⁾에 따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동 위원회의 자문 사항 중 공유재산심의회¹¹⁾의 자문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은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에 불과한바, 동 규정을 삭제한다면 동 위원회의 위법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9) 「폐교재산법」제2조(정의)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10)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¹¹⁾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2.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영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7.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2)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할지라도 폐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폐교재산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과연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인바, 동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한 안 제5조부터 제7조를 공유재산심의회의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

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안 제9조)

- 안 제9조는 폐교재산이 활용될시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장이 보조할 수 있고(안 제1항), 서울시장은 교육청에 폐교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안 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과 구분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시·도지사는 각각 소관 사무에 관한 조례안의 제출, 재의요구 및 공포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더욱이 법제처는(15-0290.,2015.11.11.) “ 하나의 조례에 시·도지사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소관 사무의 성격에 따라 시·도지사과 교육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려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는 상충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에 시장이 행사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 침해 가능성 및 교육감의 역할을 독립적으

로 규율하려는 상위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9조의 보조금 지급이 서울특별시 소관 조례에 해당하는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행정관 리담당관-11282, 2019.8.21.).

5) 위탁·운영 등에 대한 의견(안 제10조~안 제11조)

- 안 제10조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교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위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의 평가 결과를 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폐교활용법에서는 폐교재산의 관리나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의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¹³⁾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¹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일반 재산인 폐교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위탁을 별도로 규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도의 기관에 일반재산의

13)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4)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리·처분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 제10조와 안 제11조 및 부칙 안 제2조는 삭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 -11282, 2019.8.21.).

6) 기타 조문에 대한 의견

-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는 폐교재산의 대부·매각과 영구시설물의 축조,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및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폐교활용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것입니다.

- 다만 비록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중복 규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으나 폐교재산 관리의 중요성 측면과 주민의 법적 접근성 측면에서 조례상 중복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일부 조문에서 상위법령 제명과 내용의 오프기가 있는바, 이에 대한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3. 11.] [법률 제12412호, 2014. 3. 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

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시정명령 등) ① 시·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시·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淤)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